

---

# 도주·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

---

전문위원 정준화

---

## I. 개관

### 1. 의의

- ▣ 구 형법에서는 도주의 죄를 별개의 장으로, 범인은닉의 죄와 증거인멸의 죄를 같은 장에 규정하였으나, 현행법은 양 죄 모두 형사사범에 있어서의 인적도피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주의 죄와 범인은닉의 죄를 하나의 장(제9장)에 규정함
- ▣ 도주의 죄, 범인은닉의 죄는 범인을 비호하는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,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적 법익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

### 2. 보호법익

- ▣ 도주의 죄: 국가의 구금 작용
- ▣ 범인은닉의 죄: 국가의 형사사법작용, 즉 국가의 수사권·재판권 또는 형의 집행권의 행사

## II. 양형기준 설정대상

### 1.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

- ▣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(제9장)

적용법조	죄명	구성요건	법정형
§ 145①	도주	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	1년 이하의 징역
§ 145②	집합명령위반	구금된 자가 천재,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명령을 위반	1년 이하의 징역
§ 146	특수도주	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한 자	7년 이하의 징역
§ 147	도주원조	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	10년 이하의 징역
§ 148	간수자의 도주원조	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	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§ 151	범인은닉	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	3년 이하의 징역 (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)

## 2. 양형기준 설정범위

### 가.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

#### ▣ 형법 145조 1항(도주) ⇒ 포함

- 도주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행위태양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특수도주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구성요건 체계를 고려하면, 기본적 구성요건인 도주죄를 대상범죄로 포섭함이 타당함
- 판결문 검색 결과 최근 10년간 단일범 10건, 이종경합범 87건이 발견되었음(도주미수죄의 단일범 1건, 이종경합범 8건 포함)

#### ▣ 형법 145조 2항(집행명령위반죄) ⇒ 제외

-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사건명 ‘집합명령위반’으로 검색한 결과 최근 10년간 위 죄명으로 선고된 판결을 찾을 수 없는 등 사건발생빈도가 거의 없어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높지 않음
- 유의미한 양형통계자료가 없어 적정한 형량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움

#### ▣ 형법 147조(도주원조죄) ⇒ 포함

- 제3자가 구금된 자를 탈취 또는 도주하게 하는 행위는 구금된 자가 스

스로 도주하는 행위에 비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주원조죄 및 간수자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을 단순도주죄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

- 도주죄, 특수도주죄의 공범은 성립하지 않고, 도주원조죄 및 간수자 도주원조죄만이 성립하므로,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그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

## 나. 최종 양형기준 설정범위

적용법조	죄명	구성요건	법정형
§ 145①	도주	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	1년 이하의 징역
§ 146	특수도주	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한 자	7년 이하의 징역
§ 147	도주원조	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	10년 이하의 징역
§ 148	간수자의 도주원조	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	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§ 151	범인은닉	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	3년 이하의 징역 (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)

## III. 범죄유형 분류

### 1. 일반원칙

-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
-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
-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

### 2. 대유형 분류

---

## ▣ 도주, 범인은닉·도피의 2개 대유형으로 분류

- 도주죄의 보호법익은 통설상 국가의 구금권 내지 구금기능으로 보나, 범인은닉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도주죄의 보호법익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, 유형을 분리함

## 3. 소유형 분류

### 가. 도주

#### ▣ 특수도주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

- ‘일반도주죄(1년 이하 징역)와 비교하여 특수도주죄(7년 이하 징역)의 법정형을 다른 범죄<sup>1)</sup>의 경우와 달리 현격하게 가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별도의 소유형을 분류함이 바람직
- 유사례 : ① 특수강도(다만, 상해결과의 발생, 사망결과의 발생 여부에 따라 분류된 3개의 대유형의 소유형으로 각 분류), ② 특수폭행, 특수협박

#### ▣ 간수자의 도주원조죄(형법 § 148)와 도주원조죄(형법 § 147)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음

- 도주원조죄와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으로 동일하고, 간수자 도주원조죄의 법정형 하한만 1년으로 제한되므로 그 가중적 구성요건인 “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” 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

### 나. 범인은닉·도피의 소유형 분류

#### ▣ 범인은닉과 범행도피를 묶어 단일한 소유형으로 구성

- 법정형이 동일하고, 양형통계상 양형 분포가 공통적으로 징역 4~8월에 집중되어 있음

---

#### 1) <형법상 일반범죄와 특수범죄의 법정형 비교>

- 특수협박(7년↓, 협박은 3년 ↓), 특수주거침입(5년↓, 주거침입은 3년↓), 특수절도(1년~10년, 절도는 6년↓), 특수강도(무기 또는 5년↑, 강도는 3년↑), 특수상해(1~10년, 상해는 7년↓) 특수폭행(다중위력, 위험한 물건 휴대, 5년↓, 폭행은 2년↓), 특수공집방·특수체포 등은 그 죄에 정한 형의 1/2을 가중하는 방식

- 대유형에 1개의 소유형만 있는 경우가 기존 양형기준에도 상당수 있음 ⇒ 사문서 위·변조 등, 공문서 등 부정행사, 등록권리침해행위, 업무방해 등

#### 4. 최종 유형분류

1. 도주				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도주			
2	특수도주			
3	도주원조			
2. 범인은닉·도피				
구분	감경	기본	가중	
범인은닉·도피				

### IV. 형량범위 검토

#### 1.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

- ▣ 양형기준 해설상의 형량범위 설정 근거
  -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,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% 내지 80%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- 다만,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,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 및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함
- ▣ 법정형 및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함

## 2. 도주 형량범위 검토

### 가. 양형자료 조사 결과

#### 1) 선고내역

세부죄명		선고내역		전체
		실형	집행유예	
도주	수	5	4	9
	비율	55.6	44.4	100.0

#### 2) 형량분포

세부죄명		형량(월)										전체
		1	2	3	4	5	6	8	10	12	18	
도주	수	0	0	0	3	0	6	0	0	0	0	9
	비율	0.0	0.0	0.0	33.3	0.0	66.7	0.0	0.0	0.0	0.0	100.0

### 나. 형량범위 제안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도주	- 6월	4월 - 8월	6월 - 1년
2	특수도주	- 8월	6월 - 1년6월	1년 - 4년
3	도주원조	6월 - 1년6월	10월 - 2년	1년6월 - 5년

#### ▣ 제1유형(도주)

- 법정형 상한이 1년이므로 가중영역의 상한은 1년이 되어야 하는 점, 양형자료조사결과, 법정형 하한이 2년인 범죄의 형량기준 및 방치물 등 절도의 형량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도주죄의 형량범위는 감경영역(-6월), 기본영역(4월-8월), 가중영역(6월-1년)이 적정함

#### ▣ 제2유형(특수도주)

- 법정형이 동일하면서 공무방해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규정된 공용물무효 범죄(형법 143조)의 형량범위[감경영역(-8월), 기본영역(6월-1년6월), 가중영역(1년-4년)]와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

■ 제3유형(도주원조)

-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형량범위, 보호법익, 행위태양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도주원조죄의 형량범위는 감경영역(6월-1년6월), 기본영역(10월-2년), 가중영역(1년6월-5년)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

### 3. 범인은닉·도피 형량범위 검토

#### 가. 양형자료 조사 결과

##### 1) 선고내역

세부죄명		선고내역		전체
		실형	집행유예	
범인도피	수	46	347	393
	비율	11.7%	88.3%	100.0
범인은닉	수	2	16	18
	비율	11.1%	88.9%	100.0
범인도피/은닉	수	48	363	411
	비율	11.7%	88.3%	100.0
범인은닉/도피 교사	수	16	52	68
	비율	23.5%	76.4%	100%

##### 2) 형량분포

세부죄명		형량(월)										전체
		1	2	3	4	5	6	8	10	12	18	

세부죄명		형량(월)										전체
		1	2	3	4	5	6	8	10	12	18	
범인도피	수	1	3	3	109	7	192	58	13	7	0	393
	비율	0.3	0.8	0.8	27.7	1.8	48.9	14.8	3.3	1.8	0.0	100.0
범인은닉	수	0	0	0	1	0	11	3	1	1	1	18
	비율	0.0	0.0	0.0	5.6	0.0	61.1	16.7	5.6	5.6	5.6	100.0
범인도피/ 은닉	수	1	3	3	110	7	203	61	14	8	1	411
	비율	0.24	0.72	0.72	26.8	1.7	49.39	14.85	3.4	1.94	0.24	100.0
범인도피/ 은닉	실형수	1	2	2	10	0	21	7	4	1	0	48
	실형비율	2.08	4.16	4.16	20.8	0	43.8	14.58	8.33	2.08	0	99.99
범인도피/ 은닉	집유수	0	1	1	100	7	182	54	10	7	1	363
	집유비율	0	0.27	0.27	27.5	1.92	50.1	14.9	2.8	1.92	0.27	99.95
범인도피/ 은닉 교사	수	1	0	0	10	0	25	22	5	3	2	68
	비율	1.47	0	0	14.7	0	36.76	32.35	7.35	4.41	2.94	99.98
범인도피/ 은닉 교사	실형수	1	0	0	5	0	6	0	2	1	1	16
	실형비율	6.25	0	0	31.25	0	37.5	0	12.5	6.25	6.25	100
범인도피/ 은닉 교사	집유수	0	0	0	5	0	19	22	3	2	1	52
	집유비율	0	0	0	9.61	0	36.53	42.3	5.76	3.84	1.92	100

#### 나. 형량범위 제안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범인은닉·도피	- 6월	4월 - 1년	8월 - 2년

- ▣ 양형자료 조사결과에 따르면, 징역 4월이 많은 현재 양형 분포(범인도피/은닉죄는 26.8%, 범인도피/은닉교사죄는 14.7%)를 고려하여 유사범죄 중 형량범위가 가장 낮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형량범위와 유사하게 설정
- ▣ 비난가능성이 큰 성매매업소,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의 경우, 실제 대가를 수수·약속한 바지사장이나 교사범은 가중적 양형인자가 적

용될 수 있음 ⇨ 정범의 경우 징역 10월 이상이 약 6%에 그치고 있고, 교사범도 징역 10월 이상은 약 13%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, 가중영역의 하한을 징역 8월로 하는 것이 타당함

#### 4. 최종 권고 형량범위

1. 도주				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도주	- 6월	4월 - 8월	6월 - 1년
2	특수도주	- 8월	6월 - 1년6월	1년 - 4년
3	도주원조	6월 - 1년6월	10월 - 2년	1년6월 - 5년
2. 범인은닉·도피				
구분		감경	기본	가중
범인은닉·도피		- 6월	4월 - 1년	8월 - 2년

### V. 양형인자

#### 1.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

- ▣ 과거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인자를 추출함

#### 2.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

##### 가. 「1. 도주」 양형인자 검토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손괴·폭행·협박의 정도가 경	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
		미한 경우(2유형)	
	행위자 /기타	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	○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(3유형) ○ 동종 누범
일반 양형 인자	행위	○ 소극 가담	
	행위자 /기타	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○ 처벌불원(2유형)	○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집행종료 후 10년 미만)

## 1) 특별감경인자

### ▣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살인, 강도, 약취·유인, 절도, 공사문서 범죄, 마약범죄, 식품·보건범죄 등 다수인이 가담할 수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음
- 특수도주죄나 도주원조죄의 경우에 다수인 가담 형태를 상정할 수 있음
- 공사문서 범죄, 마약범죄,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서 ‘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’와 선택적으로 ‘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’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
- 양형인자의 정의
  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  - 체포자간수자의 방임 등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우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- ▣ 손괴·폭행·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(2유형)
  - 공무집행방해, 폭행·협박 등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
  - 손괴나 폭행·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수도주죄의 경우,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
- ▣ 농아자 /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/ 자수

## 2) 특별가중인자

- ▣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  - 치밀한 계획적 범행, 조직적·전문적 범행에서의 주도적 역할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행위불법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
  - 양형인자의 정의
    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   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    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
      -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
    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- ▣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(3유형2)
  - 일반 도주원조죄(10년 이하)보다 법정형이 높은 형법 제148조의 간수자의 도주원조죄(1년 이상 10년 이하)의 구성요건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
- 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/ 동종 누범

### 3) 일반감경인자

#### ▣ 소극 가담

- 대부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음
- 양형인자의 정의
  -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# ▣ 심신미약(본인책임 있음) / 형사처벌 전력 없음 / 처벌불원(2유형)

#### 나. 「2. 범인은닉·도피」 양형인자 검토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	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○ 경제적 대가의 수수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 기타	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	○ 동종 누범(위중, 증거인멸, 무고 등 포함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○ 소극 가담 ○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	○ 경제적 대가의 약속
	행위자 / 기타	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진지한 반성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	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○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위중, 증거인멸, 무고 등 포함)

---

## 1) 특별감경인자

### ▣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#### ●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도주 유형과 동일한 이유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성 있음

#### ●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·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(형법 제151조 제2항)을 감안하여 본범과의 인적 관계에 따른 부탁 또는 요청에 의한 범행일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
-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‘친구 등’ 과 같이 본범과의 관계를 기재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로 감경요소로 참작하는 등 실무상 주요한 감경요소로 취급되고 있음

#### ● 양형인자의 정의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본범과 사실혼, 연인,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,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
  - ‘죄를 범한 자’ 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▣ 농아자 /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/ 자수

---

## 2) 특별가중인자

### ▣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도로교통법위반죄, 불법게임장 관련 범죄에서 수사기관에서 범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것이 범인은닉·도피죄 실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함
- 불법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이른바 ‘바지사장’의 경우,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의 범인은닉·도피죄에 비하여 조직적, 계획적이어서 비난가능성 또는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’라는 양형인자로서 이를 포섭하여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

### ● 양형인자의 정의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(예: 불법게임장 등을 영업하면서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‘바지사장’ 역할을 하여 범인을 은닉하기로 정한 경우 등)
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경우
-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▣ 경제적 대가의 수수

- 위증죄의 경우 ‘경제적 대가의 수수’를 특별가중인자로, ‘경제적 대가의 약속’을 일반가중인자로 구분하고 있고, 횡령·배임죄의 경우에는 ‘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·수수한 경우’를 일반가중인자로 분류하고 있음
- 대부분의 판결들에서 범인은닉·도피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와 약속한 경우를 구분하여 양형이유에 기재하고 있고, 양형에 있어서도 범인은닉·도피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, 그 이

---

익의 정도 등이 고려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,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경우(특별가중)와 약속한 경우(일반가중)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
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/ 동종 누범(위증, 증거인멸, 무고 등 포함)

- 위증죄 양형기준에서 ‘동종 누범(증거인멸, 범인은닉, 무고 등 포함)’ 을 양형인자로 반영한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‘(위증, 증거인멸, 무고 등 포함)’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

### 3) 일반감경인자

▣ 소극 가담 /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/ 진지한 반성 / 형사처벌 전 력 없음

- 앞선 검토와 같음

▣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

- 범인 도피를 위하여 허위진술 등을 시도한 사안 중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쉽게 발견된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로서 감경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

- 양형인자의 정의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쉽게 허위 진술임이 발견된 경우 등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 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4) 일반가중인자

▣ 경제적 대가의 약속 / 이중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위

증, 증거인멸, 무고 등 포함)

● 앞선 검토와 같음

▣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

## VI. 집행유예 기준

### 1. 도주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<li>○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(3유형)</li><li>○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<li>○ 손괴·폭행·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(2유형)</li><li>○ 현저한 개선의 정(자수, 자백 등)</li>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</ul>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<li>○ 진지한 반성 없음</li><li>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<li>○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<li>○ 피고인이 고령</li><li>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<li>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</ul>

### 2. 범인은닉·도피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제적 대가의 수수</li> <li>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○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 등)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제적 대가의 약속</li> <li>○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</li> <li>○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○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○ 피고인이 고령</li> <li>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/ul>